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12

발의연월일: 2020. 8. 5.

발 의 자:서동용・인재근・고영인

최인호 · 양정숙 · 유정주

이동주 · 김정호 · 박영순

강민정 • 윤재갑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에서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해당 분쟁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정위원회를 통하 여 분쟁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법률 제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자와"를 "임대사업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사업자와"를 "공공주택사업자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임대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임대
<u>사업자와</u> 임차인대표회의는 다	<u>사업자 또는</u>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	
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u>공공주택사업자와</u> 임차인대	②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	
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
	격에 관한 사항